

<교육결과보고서 요약서>

| | | | |
|-------|--|--------|----------------------------|
| 훈련자 | 국주형 | 직급 | 검찰주사보 |
| 소 속 | 대검찰청 | | |
| 훈련국 | 미국 | 훈련기간 | 2021. 12. 6. ~ 2022. 6. 3. |
| 훈련기관 | William & Mary Law School | 훈련구분 | 단기 |
| 훈련목적 | RESEARCH | 보고서 매수 | 55매 |
| 내용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미국에서의 스톡킹 범죄 사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스톡킹 범죄 관련 법령, 미국에서의 스톡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관, 미국 경찰과 검찰의 스톡킹에 대한 인식, 대표적인 스톡킹 범죄 사례, 판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 미국에서는 스톡킹 범죄를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스톡킹 범죄를 객관화 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서는 스톡킹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인지, 스톡킹 범죄가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 발현되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 스톡킹 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반응들을 유형화 또는 도식화 되어 있었습니다. ○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 산하에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기관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관과 피해자간의 연계활동, 그리고 피해자들 간의 끊임없는 연계활동을 통하여 수시로 피해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우리 사법시스템에 맞게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제 및 실무 연구(개인과정)

2022. 6.

**대검찰청
국주형**

차 례

| | |
|------------------------------------|-----------|
| ■ 국외교육 개요 ----- | 1 |
| ■ 교육기관 개요 ----- | 2 |
| ■ 보고서 본문 ----- | 3 |
| I. 서론 ----- | 3 |
| II. 본론 ----- | 3 |
| 1. 우리나라에서의 스토킹 범죄 사례들 ----- | 3 |
| 가. 김○○ 스토킹 사건 ----- | 3 |
| 나. 경산 임신부 스토킹 살인 사건 ----- | 4 |
| 다.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 | 6 |
| 라. 대구 주부 스토킹 살인 사건 ----- | 6 |
| 마. 대구 스토킹 상해 사건 ----- | 6 |
| 2. 미국에서의 스토킹 범죄 사례들 ----- | 7 |
| 가. 레베카 쉐퍼 ----- | 7 |
| 나. 리처드 웨이드 팔리 스토킹 사건 ----- | 8 |
| 다. 부룩셀즈 스토킹 사건 ----- | 9 |
| 라. 기타 할리우드 유명 연예인 스토킹 사건 ----- | 9 |
| 3. 우리나라의 스토킹 법령 ----- | 10 |
| 가. 경범죄처벌법 ----- | 10 |
| 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11 |

| | |
|-------------------------------------|-----------|
| 4. 미국의 스토킹범죄 관련 법령 | 13 |
| 가. 스토킹의 정의 | 13 |
| 나. 미국 법무부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설명 | 14 |
| 다. 미국 연방법의 스토킹 범죄 관련 규정 | 16 |
| 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스토킹 범죄 관련 규정 | 17 |
| 마. 미국 버지니아주 스토킹 범죄 관련 규정 | 20 |
| 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닉스빌의 스토킹 범죄 관련 규정 | 21 |
| 사. 미국 미시간주 스토킹 범죄 관련 규정 | 22 |
| | |
| 5. 미국의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시스템 | 24 |
| 가. 국가가정폭력핫라인(thehotline.org) | 27 |
| 나. 범죄피해자배움센터(victimconnect.org) | 33 |
| 다.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연합(ncadv.org) | 39 |
| | |
| 6. 미국 일선 경찰서에서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 | 41 |
| | |
| 7. 미국 검찰청에서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 | 43 |
| | |
| 8. 미국 버지니아주에서의 스토킹에 관한 주요 판례 | 44 |
| 가. 뱅크 vs. 버지니아 | 44 |
| 나. 스테판 vs. 로즈 | 46 |
| | |
| Ⅲ. 결론 및 제언 | 50 |
| | |
| Ⅳ. 참고자료 | 52 |

■ 국외교육 개요

1. 파견국가 : 미국

2. 교육기관명 : 윌리엄 앤 메리 로
스쿨(Williams & Mary Law
School)

3. 교육분야 : 검찰수사

4. 교육기간 : 2021. 12. 6. ~
2022. 6. 3.

■ 교육기관 개요

| | | |
|--------------|--|--------------------|
| 명 칭 | William & Mary Law School | |
| 교육기관 성 격 | 로스쿨(대학원 과정) | |
| 소재지 | 613 South Henry St. Williamsburg, VA 23185-4110 | |
| 홈페이지 | https://www.wm.edu | |
| 설립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과정인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은 영국 국왕이었던 윌리엄 Ⅲ 및 메리 Ⅱ를 기념하기 위해 1693년도에 설립됨 ○ 대학원 과정인 윌리엄 앤 매리 로스쿨은 1779년도에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에 요구에 의해 설립됨 | |
| 조 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과정인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은 인문과학대(Arts & Science), 경영대(Business), 사범대(Education) 등이 있음 ○ 대학원 석사과정 : 위 학부 3개의 단과대에 법대(로스쿨), 해양과학대가 추가됨 | |
| 주요인사 인적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Benjamin Spencer (Dean of the Law School) ○ Aaron-Andrew P. Bruhl (Associate Dean for Research and Faculty Development) | |
| 교섭창구 | ○ Jennifer Stevenson (Associate Dean for Graduate Programs, Director, LLM. Program & William & Mary Law School) | |
| | 전화 | + 1 757 221 3683 |
| | E-mail | jsstevenson@wm.edu |

보고서 본문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폭력, 사이버스토킹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 스토킹 범죄는 살인, 또는 살인미수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 4. 20.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되었고 2021. 10. 2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무부령도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스토킹에 관한 법률을 전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입법한 나라로써 스토킹을 중대한 범죄로 빠르게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미국에서의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판결례, 피해회복 등에 국가기관 및 운영시스템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도입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용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훈련결과보고서의 목적입니다.

II. 본론

1. 우리나라에서의 스토킹 범죄 사례들

우리나라의 범죄 통계를 보면 스토킹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유독 스토킹 범죄가 잔혹한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 스토킹 사건, 지속적인 스토킹 이후 교체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얼굴, 목 등을 칼로 잔혹하게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례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 1) 김○○ 스토킹 사건

-
- 1) 경향신문 「경찰, 노원구 스토킹 살해 김○○ 에 사형 구형」 오경민 기자(2021.09.13.)
 - 2) 한국일보 LIVE ISSUE 김○○ 스토킹 살인사건 「“큰딸 차단에 양심, 가족 죽일 수 있다

김○○은 2021년 3월 23일 오후 6시 40분 경 퀵서비스 배달원을 가장해 피해자의 여동생만 있는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여동생을 살해하고 이어 오후 10시쯤 귀가한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오후 11시 30분경 귀가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김○○은 2020년 온라인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게임 속 같은 팀으로 채팅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이 생겼고 2020년 11월부터 카카오톡이나 보이스톡으로도 대화도 하다가 2021년 1월에는 두 차례 직접 만나 PC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연락 말아달라”며 거절당했고, 그날 저녁 피해자를 만나러 집 주위를 배회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공중전화나 지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연락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은 두 달에 가까운 일방적 접근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분노와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 김○○은 피해자의 근무일정을 알아내 범행 시기를 정할 속셈으로,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아이디로 게임에 접속하고 닉네임을 바꿔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살해 방법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체화하였습니다. 범행 당일 김○○은 퀵서비스 배달 기사를 가장해 피해자 집에 침입하였고 김○○은 혼자 있던 피해자의 여동생과 외출했다가 돌아온 모친, 늦은 오후 귀가한 피해자들을 차례로 살해하였습니다.

김○○은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폰 속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통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하거나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김○○은 흥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중간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피의자는 냉장고에서 맥주와 주스를 꺼내 마시고 갈증을 달랠 후 자해를 시도하였고 범행 이틀 뒤인 25일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자신의 집착으로 피해자 가족 등 세 명을 살해한 최근 발생한 가장 잔혹하고 악랄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나. 3)경산 임신부 스토킹 살인 사건

생각” 김○○이 밝힌 범행」 오지혜 기자(2021. 04. 09.)

3) 나무위키 「경산 임신부 스토킹 살인사건」 (2021. 11. 11.)

2009년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스토킹으로 시작하여 결국 살인이라는 중범죄로 이어진 사건인데 대낮 아파트에서 3살 난 피해자의 딸아이가 보는 가운데 임신부를 망치 등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2001년 9월, 가해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면서 교제해왔습니다. 4년 정도 사귀다 두 사람은 헤어졌고, 이후 피해자는 연락을 끊었는데 2006년경 피해자가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자 가해자는 앙심을 품고 직장도 그만둔 다음, 범행 이전인 약 3년간 피해자의 집을 추적하여 “나와 사귀는 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는 피해자를 위협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협박을 가하고, 수 회에 걸쳐 갖은 명목으로 민·형사 소송을 벌이며 피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의 협박 등 증거를 수집해 2007년 부산지법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포기하지 않았고 민·형사 소송이 오가면서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극에 달한 가해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을 수차례 배회하면서 피해자가 매일 일정하게 어린이집에서 세살배기 딸을 찾아 혼자 귀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었고, 미리 칼, 망치, 청테이프, 노끈, 수건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검은색 가방에 넣어 준비하였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범행 후 도주를 생각한 것인지 렌터카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해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인 2009년 5월 25일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여느 때처럼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혼자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피해자가 잠이 든 딸아이를 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곧장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타고 앉아 주먹으로 얼굴에 수차례 가격하고, 미리 준비해 간 망치(총길이 40cm)의 정 부분으로 콧등과 뺨을 힘껏 내리치고, 그 힘을 못 이겨 망치 자루가 부러져 나가자 부러진 망치 자루 부분으로 다시 얼굴을 수차례 내리찍고, 이어 미리 준비해 간 칼로 머리와 얼굴 부위, 가슴, 배와 옆구리, 팔과 어깨 등 온몸을 20차례에 걸쳐 닥치는 대로 찢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다. 4)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하다가 어느 순간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하지 않으면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말에 “함께 죽자”, “죽여버리겠다” 는 등의 위협적인 말들을 하며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스토킹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거의 매일 피해자의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멀리서 지켜보았고 심지어는 아파트 맞은편 교회에 올라가 집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였으며 설새 없이 문자와 협박 전화를 하였는데 “예전 여자친구도 헤어질 때 죽이려다 실패해서 다리만 부러뜨렸는데 너는 실패하지 않겠다” 며 협박의 수위를 높여가다 2016년 4월 19일 낮 12시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문을 나서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횡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라. 5)대구 주부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는 스스로 “내연 관계” 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년 7월 27일 오전 6시 50분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 골목길에서 출근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수사 도중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것입니다. 범인은 피해자에 대해 “예기를 좀 하자는데 안 만나줬다. 좋아하는데 안 만나주고 피하니까 화가 났다. 그래서 칼로 겁만 주려고 했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토킹이 결국 살인이라는 중범죄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마. 6)대구 스토킹 상해 사건

4) 한겨레 「“죽겠다” 협박하던 그놈만 살았다, 가락동 스토킹살인 2년」 이재원 기자(2018. 4. 19.)
5) 시사저널 「제27화 대구 주부 스토킹 살인 사건」 (시사저널 2016년 1월 1371호, 3페이지)
6) 부산일보 「명절에 또 스토킹범죄, 신변보호받던 여성, 흉기 찔려 중상」 박정미 기자 (2022. 1. 30.)

피해자는 2022. 1. 29. 오전 10시 50분경 대구시 동구 효목동 한 아파트에서 인근 상가의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에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어깨 등을 찔려 쓰러졌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동거하면서 폭행과 감금, 협박에 시달려 왔고 2021년 9월 흉기로 위협당한 뒤부터 집을 나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그와 상관없이 피해자 주변을 계속 맴돌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40대 여성이 스토킹 범죄로 가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이 여성은 출근길에 가방에 있던 스마트워치를 누를 새도 없이 가해자의 공격을 당한 사건입니다.

2. 미국에서의 스토킹 범죄 사례들

가. 7레베카 쉐퍼

1986년에 미국 CBS채널에서 방영돼 많은 인기를 끌었던 “My Sister Sam” 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당시 동생 패티역을 맡았던 레베카 쉐퍼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배우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모델을 시작해 백화점 카탈로그와 TV광고에도 출연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 그런 그녀는 스토킹 범죄의 희생되어 21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970년 1월 2일,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일곱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난 가해자 로버트는 어릴 적부터 양극성 장애진단을 받은 남성이었습니다. 감정의 장애를 주요 증상으로 하는 내인성 정신병, 조울증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병은 그의 모든 것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물론 청소년기에는 이를 치료해보려 시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자주 자신의 울분을 토하며 폭력을 휘둘러 주위에 피해를 입히곤 했습니다. 폭력으로 체포된 횟수만 3번이라고 하며, 로버트의 이웃들은 그의 짙은 폭력성과 위협적인 행동에 항상 불안해 했습니다. 로버트는 한가지에 빠져들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그 일에 집착하는

7) <https://teriousmy.tistory.com/284> [살인자 이야기] 3년간의 스토킹, 그리고 여배우의 죽음

습성을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 그는 아역 배우였던 사만다 스미스를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1985년에 사만다가 사고로 사망하자 다른 유명한 인물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마돈나, 티파니, 데비 깁슨 등 유명 인사들만 쫓아다니던 로버트의 관심은 어느 날 TV에 출연한 레베카에게 쫓히고 맙니다. 사랑한다는 수많은 편지를 비롯해 촬영장에까지 무단 침입하던 로버트는 탐정 사무소에 의뢰해 그녀의 집 주소를 알아냅니다. 탐정이 건네준 자동차 기록부를 통해 레베카의 주소를 알게 된 그는 1989년 7월 18일, 레베카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레베카를 만나게 된 로버트는 팬이라 말하며 그녀에게 다가갔고 처음에는 별생각 없이 그를 보던 레베카는 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그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로버트는 얼마 전 그녀가 출연했던 상류 사회라는 영화에서 야한 장면을 찍었다고 화를 내며 청순함을 잃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추후 증언에서 그는 그녀가 섹스 장면을 촬영했기 때문에 그녀가 결백을 잃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간 그녀는 한 시간 후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문을 열었고 로버트는 그녀에게 총을 발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나. 8)리처드 웨이드 팔리 스토킹 사건

이 사건의 가해자는 리처드 웨이드 팔리라는 남성입니다. 그는 동료 로라블랙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선을 넘은 스토킹을 계속해 왔습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난 가해자는 1984년 아버지를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일하게 되고 1984년 그곳에서 22세의 로라블랙을 만나게 되어 그녀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편지와 선물을 주곤 하였습니다. 로라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며 그녀를 괴롭힙니다. 리처드는 거짓된 구실을 만들어 회사에서 그녀의 파일을 뒤져 그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성공합니다. 리처드가 로라에게 보낸 편지는 4년 동안 200통 정도가 될 정도로 많았고, 로라는 그의 스토킹을 피해 4번이나 이사를 갔지만 그는 매번 그녀의 주소를 알아내 스토킹을 지속하였습니다.

8) <https://blog.naver.com/celibate/222594201998> 스토킹방지법을 통과시키게 한 사건의 가해자 <리처드 팔리> 사건

그녀는 1985년 회사 인사부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리처드의 괴롭힘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1988년 로라는 그에 대해 임시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가해자는 그녀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고 그녀가 거부하면 스스로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무기로 무장한 그는 1,000발이 넘는 탄약을 들고 건물에 접근하면서 사람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하였는데 로라의 사무실로 향하면서 마주친 직원들은 대부분 그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로라 역시 그가 쏜 총에 왼쪽 어깨에 맞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SWAT팀의 저격수들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지 못하게 방으로 이동하면서 무려 5시간 동안 돌아다녔다고 하며, 로라는 의식을 되찾고 어렵사리 탈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경찰에 항복하여 체포되었는데 그가 쏜 총알이 무려 98발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으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는 1993년에 영화로도 개봉되었는데 제목은 『Stalking Laura / “I can make you love me”』입니다.

다. 9)10)부룩셀즈 스토킹 사건

위 영화에 등장하였던 브룩셀즈는 실제로 자신이 무려 30년간 스토킹의 피해를 입어왔다고 합니다. 스토키는 브룩셀즈의 두 딸에게까지 몰래 접근해 박제된 동물을 선물하기도 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들을 계속하자 결국 그녀는 스토키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스토키는 브룩셀즈의 자택에 몰래 침입하기도 하는 등 그녀와 가족들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라. 기타 할리우드 유명 연예인 스토킹 사건

이외에 할리우드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다른 스토킹 사건을 보면 영화 아이언 맨 등에서 출연한 여배우 기네스 펠트로에 대한 스토킹 사건도 있습니다. 기네스 펠트로는 자신이 1999년부터 스토킹 범죄의 피

9) <https://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21500056>

「브룩 셀즈, 스토키 고소 “두 딸에게 박제된 동물 선물” 30년 동안..」

10)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4741 「 무려 30년 동안? 할리우드의 소름 돋는 스토킹 사례들」

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01년 정신 병원에 입소한 전력이 있는 스토키는 기네스 펠트로에게 66통에 이르는 협박 편지를 보냈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포르노와 자위 도구 등 역겨운 물건들을 기네스 펠트로에게 보내는 편지에 함께 동봉하기도 하였는데 기네스 펠트로는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너무 두려웠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스토키로부터 “내 몸에 지은 죄가 많다. 칼로 해부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 기네스 펠트로는 실제로 신체 상해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 ‘패닉룸’ 등에 출연한 여배우 조디포스터는 유독 어린 시절부터 스토키에 자주 시달렸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을 저격한 존 힝클리 주니어로부터 스토키를 당한 사건입니다. 스토키는 그녀가 다니는 예일대학교 근처의 모텔에 기거하기도 하는 등 그녀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스토키를 하였는데 “내가 저지른 모든 행동은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사기 위함이다” 라고 진술하였다고도 합니다. 이외에도 할리우드 스타들에 대한 스토키 사례는 많습니다.

3. 우리나라의 스토키 법령

가. 경범죄처벌법

우리나라에서 스토키 범죄는 상당 부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2013년도에 신설된 경범죄 처벌법(시행 2013. 3. 22., 법률 제11401호, 2012. 3. 21., 전부개정) 제2장 제3조 41호를 보면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범죄를 정의하였는데 이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호(흥기의 은닉휴대)는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

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는 같은 조 제19호(불안감조성)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혐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40호(장난전화 등)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어서 살인 등 중범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한 범죄에 대한 사전 억제력이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범죄자가 10만원의 벌금이 두려워 자신의 행위를 자제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 11)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국회는 2021. 3.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였고 2021. 4. 20. 스톱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법률 제18083호) 2021. 10. 2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위 법률 제안이유를 보면 「최근 스톱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톱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스톱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톱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톱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라는 것입니다.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8083호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톱킹처벌법)

12)국회사이트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L1A0W3K2Z3K1U7H1Z0G0U8D9O1H5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의 정의(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을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그림·부호·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라고 하였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법에서는 그 행위로써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열거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의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는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합니다.

스토킹행위에 대한 응급조치 등(안 제3조 및 제4조 등)을 보면 1)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의 스토킹행위를 금지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3)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잠정조치의 청구 및 결정)을 보면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는바 제17조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미국의 스토킹범죄 관련 법령

가. 스토킹의 정의

13) 스토킹은 영어로 stalking으로 stalk라는 동사의 동명사형입니다. 동사원형인 stalk를 네이버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공격대상에게) 몰래 접근하다. 쫓아다니며 괴롭히다, (사냥감·사람 등에) 몰래 접근하다, 가만히 뒤를 밟다, (이성에게) 집요하게 추근대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위키피디아는 14)Stalking에 대하여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 원치 않음에도 계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다. 스토킹 행위는 학대나 위협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감시(관찰)하는 것”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미국 법무부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설명

미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홈페이지에서 스토킹범죄에 관한 자료를 검색해 보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여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자료 등 여러 자료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법무부는 스토킹에 대하여 “15)스토킹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신변에 불안을 느끼도록 하는 일정한 기간에 계속 반복되는 행위(course of conduct)를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3) 네이버 어학사전, 동사 “stalk”을 검색

https://dict.naver.com/search.dict?dicQuery=stalk&query=stalk&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14) <https://en.wikipedia.org/wiki/Stalking>

Stalking is unwanted and/or repeated surveillance by an individual or group toward another person.[1] Stalking behaviors are interrelated to harassment and intimidation and may include following the victim in person or monitoring them. The term stalking is used with some differing definitions in psychiatry and psychology, as well as in some legal jurisdictions as a term for a criminal offense.[2][3]

15) WHAT IS STALKING? The term “stalking” means engaging in a course of conduct directed at a specific person that would cause a reasonable person to fear for his or her safety or the safety of others or suffer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ABOUT OUR AGENCY TOPICS NEWS RESOURCES CAREERS CONTACT

Home » 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 (OVW) SHARE

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 Home

- ▶ About the Office
- OVW Blog
- OVW Podcast
- Legislation and Regulations
- Domestic Violence
- Sexual Assault
- Dating Violence
- Stalking
- ▶ How to Apply for OVW Funding
- ▶ After Receiving OVW Funds
- ▶ OVW Grants and Programs
- ▶ Tribal Affairs
- Reports to Congress
- Press Room
- OVW FOIA
- Contact the Office

STALKING

Help for Victims | What is Stalking? | Resources

HELP FOR VICTIMS AND TO REPORT STALKING

If you are in immediate danger, call 911. Contact your local police department to report stalking and stalking-related incidents and/or threats. OVW does not provide services directly to the general public. Find local help on our map or call the national hotlin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
1-855-4-VICTIM (1-855-484-2846)

For more information visit: [Stalking Prevention, Awareness, and Resource Center](#)[®]

WHAT IS STALKING?

The term "stalking" means engaging in a course of conduct directed at a specific person that would cause a reasonable person to fear for his or her safety or the safety of others or suffer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STALKING RESOURCE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ffice on Women's Health


Looking for information that used to be on OVW's website? [Visit OVW's archive.](#)

QUICK EXIT

Click 'Quick Exit' above to immediately leave this site. If you are in immediate danger, call 911.

Tweets by @OVWJustice

OVW @OVWJustice
Statement from OVW Principal Deputy Director Allison Randall on the nomination of Rosemarie Hidalgo as OVW Director. [whitehouse.gov/briefing-room/...](#)



FEDERAL AND STATE STALKING LAWS

The Violence Against Women of 2005 (VAWA 2005) became effective on January 5, 2006. **Stalking and cyberstalking may be a federal felony if an individual travels across state, foreign or tribal lines with the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or place under surveillance with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or intimidate another person in the course of or as a result of such travel that person is placed in reasonable fear of serious bodily injury or death to him or herself or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is caused to that person or to that person's immediate family or intimate partner. It is also a crime to stalk on military or U.S. Territorial lands, including Indian country. 18 U.S.C. §2261A(1)

with the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or place under surveillance with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or intimidate, or cause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to a person in another State or tribal jurisdiction or within the special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uses the mail, or any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or any facility of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to engage in a course of conduct that causes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to that person or places that person in reasonable fear of the death of, or serious bodily injury to any of the persons described...." 18 U.S.C. § 2261A (2)

Maine also has a stalking law. Title 17-A MRSA §210-A This law specifically prohibits a person from intentionally or knowingly maintaining a repeated visual or physical proximity to a person or conveying repeated oral or written threats. Threats may be implied by the stalker's conduct. The new state law also protects immediate family members from this conduct. Violations of this law are a misdemeanor. If the stalker has two or more previous convictions for stalking or violating a protection order then the violation is a felony.

IF YOU ARE IN DANGER FIND A SAFE PLACE TO GO

- ✓ Police/Fire Department
- ✓ Homes of friends or relatives preferably unknown to the stalker
- ✓ Family crisis shelters
- ✓ Crowded public buildings or places

PROMPTLY NOTIFY POLICE AGENCIES

- ✓ Give an accurate description of the stalker, his or her vehicle, address (if known) and a recent photograph if you have one.
- ✓ Notify security personnel in apartments and/or appropriate personnel at your work place.
- ✓ Ask law enforcement about security measures they can initiate. Some agencies have cell phones programmed to dial 9-1-1 and VARDA alarms available for stalking victims. "Panic button" alarms can be rented from private security agencies.

As well as helping to protect you, law enforcement can keep an **independent** record of your complaints, which may help you get a protection order from the court or demonstrate that an existing order has been violated.

DOCUMENT STALKING BEHAVIOR

It is **vitaly important to keep a record of stalking incidents** which may support a criminal prosecution.

- ✓ Record dates, time of day and places of contact with the stalker.
- ✓ Log any telephone calls and save answering machine messages.
- ✓ Save any correspondence from the stalker, including the envelope.
- ✓ Document threats **in detail**.
- ✓ Provide names and addresses of witnesses to any of the stalking incidents to law enforcement or the criminal prosecutor.

OTHER ILLEGAL ACTS

Stalking itself may not be the only state or federal crime a stalker commits against you. Has the stalker:

- ✓ Assaulted you physically or sexually?
- ✓ Entered your home without your permission?
- ✓ Damaged or stolen your property?
- ✓ Traveled across state lines with intent to do harm?
- ✓ Illegally possessed a firearm or other weapon?
- ✓ Violated a protection order?

Report any of these incidents to law enforcement, who may wish to photograph any injuries to you or damage to your property.

[스토킹에 관한 연방 및 주법]

2005년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이 2006. 1. 5.에 발효되었습니다. 스토킹과 사이버스토킹은 만일 개인이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미국의 각 주나, 해외, 또는 부족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경우 연방법에 의한 중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의도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괴롭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괴롭히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감시하에 두는 경우, 만일 그러한 이동의 과정에서 또는 그러한 이동의 결과 다

른 사람의 직계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죽음에 대한 합리적인 공포나 중대한 정서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 또한 군대 부지나 인디언 거주지역을 포함한 미국 영토 내에서 그러한 행위도 포함합니다.
- 또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괴롭히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괴롭히거나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감시하에 두려는 의도, 또는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가할 의도를 가지고 미국 영토 내에서 우편, 또는 다른 컴퓨터 서비스, 또는 각 주를 걸쳐 있거나 해외 상업 기관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메인주도 스토킹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고의적으로, 또는 다 알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시각적 또는 육체적 가까움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으로 위협은 유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법은 직계가족들을 이러한 행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위반은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만일 가해자가 스토킹이나 보호명령을 2회 이상 어긴 경우라면 중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 미국 연방법의 스토킹 범죄 관련 규정

미국 연방법은 각주를 걸쳐 행하여지는 범죄에 적용될수 있는데 연방법에 스토킹 범죄도 규정해 놓았습니다. 16)미국 연방법에서 스토킹

16) THOMSON REUTERS WESTLAW EDGE. (미국 연방법)

[https://1.next.westlaw.com/Link/Document/FullText?findType=L&pubNum=1000546&cite=18USCAS2261A&originatingDoc=N5B717EC0B8AC11D8983DF34406B5929B&refType=LQ&originationContext=document&transitionType=DocumentItem&ppcid=5fde8bc3153c4f6e960761581ed94fcb&contextData=\(sc.DocLink\)](https://1.next.westlaw.com/Link/Document/FullText?findType=L&pubNum=1000546&cite=18USCAS2261A&originatingDoc=N5B717EC0B8AC11D8983DF34406B5929B&refType=LQ&originationContext=document&transitionType=DocumentItem&ppcid=5fde8bc3153c4f6e960761581ed94fcb&contextData=(sc.DocLink))

미국 연방법 18 U.S.C.A. § 2261A

§ 2261A. Stalking(Effective: December 22, 2020), Currentness

Whoever--

(1) travels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or is present within the special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or enters or leaves Indian country, with the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intimidate, or place under surveillance with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or intimidate another person, and in the course of, or as a result of, such travel or presence engages in conduct that--

(A) places that person in reasonable fear of the death of, or serious bodily injury to--

(i) that person;

(ii) an immediate family member (as defined in section 115) of that person;

(iii) a spouse or intimate partner of that person; or

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감시하에 두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였는데 그러한 결과 피해자가 죽거나 심한 육체적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fear)이 들게 할 때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스토킹 행위의 대상자는 직접적인 상대방이나 직계가족, 배우자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 그러한 사람들의 애완동물, 반려동물, 말이 될 수가 있으며, 이들에 대해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도록 시도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러한 고통을 일응 일으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그럴 의도로 감시하에 둘 목적으로 우편물을 사용하거나 서로 대화가 가능한 컴퓨터 서비스, 또는 전자통신서비스 또는 각 주간 전자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애완동물, 서비스 동물, 반려동물, 말에 대하여 합리적인 공포를 일으키거나,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주려고 시도하거나, 충분히 줄 것으로 일응 판단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스토킹 범죄 관련 규정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본토 남서쪽에 있는 주입니다. 17)미국

(iv) the pet, service animal, emotional support animal, or horse of that person; or
(B) causes, attempts to cause, or would be reasonably expected to cause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to a person described in clause (i), (ii), or (iii) of subparagraph (A); or

(2) with the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intimidate, or place under surveillance with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or intimidate another person, uses the mail, any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system of interstate commerce, or any other facility of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to engage in a course of conduct that--

(A) places that person in reasonable fear of the death of or serious bodily injury to a person, a pet, a service animal, an emotional support animal, or a horse described in clause (i), (ii), (iii), or (iv) of paragraph (1)(A); or

(B) causes, attempts to cause, or would be reasonably expected to cause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to a person described in clause (i), (ii), or (iii) of paragraph (1)(A),

shall be punished as provided in section 2261(b) or section 2261B, as the case may be.

17) 캘리포니아 법령 Effective: January 1, 2008

West's Ann.Cal.Penal Code § 646.9

§ 646.9. Stalking

Currentness

- (a) Any person who willfully, maliciously, and repeatedly follows or willfully and maliciously harasses another person and who makes a credible threat with the intent to place that person in reasonable fear for his or her safety, or the safety of his or her immediate family is guilty of the crime of stalking,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a county jail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of not more than one thousand dollars (\$1,000), or by both that fine and imprisonment, or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 (b) Any person who violates subdivision (a) when there is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injunction, or any other court order in effect prohibiting the behavior described in subdivision (a) against the same par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for two, three, or four years.
- (c)(1) Every person who, after having been convicted of a felony under Section 273.5, 273.6, or 422, commits a violation of subdivision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a county jail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of not more than one thousand dollars (\$1,000), or by both that fine and imprisonment, or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for two, three, or five years.
- (2) Every person who, after having been convicted of a felony under subdivision (a), commits a violation of this sec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for two, three, or five years.
- (d) In addition to the penalties provided in this section, the sentencing court may order a person convicted of a felony under this section to register as a sex offender pursuant to Section 290.006.
- (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harasses" means engages in a knowing and willful course of conduct directed at a specific person that seriously alarms, annoys, torments, or terrorizes the person, and that serves no legitimate purpose.
- (f)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course of conduct" means two or more acts occurring over a period of time, however short, evidencing a continuity of purpose. Constitutionally protected activity is not included within the meaning of "course of conduct."
- (g)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credible threat" means a verbal or written threat, including that performed through the use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 or a threat implied by a pattern of conduct or a combination of verbal, written, or electronically communicated statements and conduct, made with the intent to place the person that is the target of the threat in reasonable fear for his or her safety or the safety of his or her family, and made with the apparent ability to carry out the threat so as to cause the person who is the target of the threat to reasonably fear for his or her safety or the safety of his or her family. It is not necessary to prove that the defendant had the intent to actually carry out the threat. The present incarceration of a person making the threat shall not be a bar to prosecution under this section. Constitutionally protected activity is not included within the meaning of "credible threat."
- (h)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elephones, cellular phones, computers, video recorders, fax machines, or pagers. "Electronic communication" has the same meaning as the term defined in Subsection 12 of Section 2510 of Title 18 of the United States Code.
- (i)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conduct that occurs during labor picketing.

캘리포니아 법령에서 스토킹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도적이고 악의를 가지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타인을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의도적이고, 악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타인을 따라다니거나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이나 자신의 직계가족의 안전에 합리적인 공포심(reasonable fear)을 주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위협을 가하는 경우”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최대 1년 미만이 징역, 또는 1,000달러 미만의 벌금형, 또는 징역과 벌금형의 병과, 또는 주 교도소에서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다른 명령, 또는 다른 법원의 명령이 있음에도 그것을 어기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주 교도소에서 2 ~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후유증을 남기는 등의 중범죄로 기소된 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군 감옥에서 1년 미만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미만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거나 주 감옥

-
- (j) If probation is granted, or the execution or imposition of a sentence is suspended, for any person convicted under this section, it shall be a condition of probation that the person participate in counseling, as designated by the court. However, the court, upon a showing of good cause, may find that the counseling requirement shall not be imposed.
 - (k)(1) The sentencing court also shall consider issuing an order restraining the defendant from any contact with the victim, that may be valid for up to 10 years, as determined by the court. It is the intent of the Legislature that the length of any restraining order be based upon the seriousness of the facts before the court, the probability of future violations, and the safety of the victim and his or her immediate family.
 - (2) This protective order may be issued by the court whether the defendant is sentenced to state prison, county jail, or if imposition of sentence is suspended and the defendant is placed on probation.
 - (l)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immediate family” means any spouse, parent, child, any person related by consanguinity or affinity within the second degree, or any other person who regularly resides in the household, or who, within the prior six months, regularly resided in the household.
 - (m) The court shall consider whether the defendant would benefit from treatment pursuant to Section 2684. If it is determined to be appropriate, the court shall recommend that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make a certification as provided in Section 2684. Upon the certification, the defendant shall be evaluated and transferred to the appropriate hospital for treatment pursuant to Section 2684.

에서 2 ~ 4년 동안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고법원은 중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성범죄자로 등록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 미국 버지니아주 스토킹 범죄 관련 규정

미국의 버지니아주는 공식적으로는 버지니아 커먼웰스(Commonwealth of Virginia)라고 합니다. “버지니아“라는 이름은 “처녀 여왕“이라고 불린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를 따라 붙여졌습니다. 북쪽으로 웨스트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워싱턴 D.C.(포토맥 강을 끼고)와 접하며, 동쪽으로 체서피크만과 대서양, 남쪽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 서쪽으로 켄터키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접하고 있습니다.

18)미국 버지니아 법률(VA Code Ann. § 18.2-60.3, Stalking; penalty, 2016. 7. 1. 시행)를 보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가족 구성원에 대

18) THOMSON REUTERS WESTLAW EDGE. (버지니아 법전)

[https://1.next.westlaw.com/Link/Document/FullText?findType=L&pubNum=1000040&cite=VASTS18.2-60.3&originatingDoc=I29766bc9037311dabf60c1d57ebc853e&refType=LQ&originationContext=document&transitionType=DocumentItem&ppcid=05d430ec4ac54abf9aba17ce65004dda&contextData=\(sc.RelatedInfo\)](https://1.next.westlaw.com/Link/Document/FullText?findType=L&pubNum=1000040&cite=VASTS18.2-60.3&originatingDoc=I29766bc9037311dabf60c1d57ebc853e&refType=LQ&originationContext=document&transitionType=DocumentItem&ppcid=05d430ec4ac54abf9aba17ce65004dda&contextData=(sc.RelatedInfo))

버지니아 법령 § 18.2-60.3. Stalking; penalty, Effective: July 1, 2016, VA Code Ann. § 18.2-60.3

Currentness

- A. Any person, except a law-enforcement officer, as defined in § 9.1-101, and acting in the performance of his official duties, and a registered private investigator, as defined in § 9.1-138, who is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 9.1-139 and acting in the course of his legitimate business, who on more than one occasion engages in conduct directed at another person with the intent to place, or when he knows or reasonably should know that the conduct places that other person in reasonable fear of death, criminal sexual assault, or bodily injury to that other person or to that other person's family or household member is guilty of a Class 1 misdemeanor. If the person contacts or follows or attempts to contact or follow the person at whom the conduct is directed after being given actual notice that the person does not want to be contacted or followed, such actions shall be prima facie evidence that the person intended to place that other person, or reasonab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other person was placed, in reasonable fear of death, criminal sexual assault, or bodily injury to himself or a family or household member.
- B. Any person who is convicted of a second offense of subsection A occurring within five years of a prior conviction of such an offense under this section or for a substantially similar offense under the law of any other jurisdiction is guilty of a Class 6 felony.

한 상당히 합리적인 죽음이나 성범죄, 또는 신체적 공격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하는 행위를 1회 이상 유발하였거나 그런 행위가 다른 사람의 가족 또는 세대 구성원에게 위와 같은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1회 이상 하는 경우”에 경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접촉을 원치 않거나 따라다니는 것을 원치 않음을 고지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접촉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이나 가족, 세대구성원에 대한 죽음이나 성범죄, 또는 신체에 위협에 대한 합리적인 공포심을 주거나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로 5년 이내에 기소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기소되는 경우 그때에는 중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바. 미국 19)펜실베이니아주 피닉스빌(Phoenixville)의 스토킹 범죄 관련 규정

펜실베이니아주는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주입니다. 북쪽과 북동쪽으로 뉴욕주, 동쪽으로 델라웨어 강을 끼고 뉴저지주, 남쪽으로 델라웨어주, 메릴랜드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서쪽으로 오하이오주, 북서쪽으로 이리

19) Stalking in Pennsylvania law

[<https://www.legis.state.pa.us/WU01/LI/LI/CT/HTM/18/00.027.009.000..HTM>

Chief Brian Marshall, Phoenixville Police Department(351 Bridge St. 1st Fl, Phoenixville, PA 19460, www.Phoenixville.org)]

* 본 저자의 Brian Marshall이라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닉스빌 경찰관(FBI NA 278기)이 2022. 2. 5.에 본 수사관에게 관련 법령을 이메일로 전달해 주어 이를 논문에 기재하여 참고함

§ 2709. Harassment.

(a) Offense defined.--A person commits the crime of harassment when, with intent to harass, annoy or alarm another, the person:

(1) strikes, shoves, kicks or otherwise subjects the other person to physical contact, or attempts or threatens to do the same;

(2) follows the other person in or about a public place or places;

(3) engages in a course of conduct or repeatedly commits acts which serve no legitimate purpose;

(4) communicates to or about such other person any lewd, lascivious, threatening or obscene words, language, drawings or caricatures;

(5) communicates repeatedly in an anonymous manner;

(6) communicates repeatedly at extremely inconvenient hours; or

(7) communicates repeatedly in a manner other than specified in paragraphs

호와 접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피닉스빌의 스토킹 범죄 규정을 살펴보면 스토킹을 학대라는 범주에 포함시켜 놓았는데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짜증나게 하거나(annoy) 놀라게 할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밀치거나 차거나 다른 물건으로 신체를 충격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공개적인 장소나 그 부근에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행위,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놀라게 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일정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음란한, 음탕한, 위협적인, 또는 외설적인 말, 그림 등을 전달하는 것, 계속적으로 익명으로, 또는 매우 부적절한 시간에 정보전달 매체를 통하여 의사 전달을 시도하려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 미국 미시간주 스토킹 범죄 관련 규정

미시간주는 동북쪽에 위치한 주로 미시간호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많은 물’을 뜻하는 인디언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미시간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9번째로 인구가 많고, 면적 크기로는 11위입니다.

미시간주의 스토킹 조항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시간주에는 스토킹 범죄에 관하여 경범죄 조항과 중범죄 조항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중범죄로 규정한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내용에 가중처벌되는 경우인데 미시간주의 중범죄 법령에 규정된 규정을 보면 “스토킹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다른 사람이 공포에 떨게 하거나 놀라거나 위협받거나 협박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동의 없는 접촉(unconsented contact)이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시작되거나 계속된 접촉, 또는 다른 사람이 그 접촉을 피하고 싶어하는 또는 그만두기를 바라는 의사표현을 하였음에도 시작되거나 계속된 접촉을 말합니다. 동의 없는 접촉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지만 그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리에서 따라가거나 나타나는 행위, 공개된 장소나 개인 사유지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대면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 일하는 장소나 거주지에 나타나는 행위,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리스하거나 점유하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그곳에서 남아 있는 행위, 타인과 전화로 접촉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을 보내거나 전자메일 등을

보내는 행위,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리스하거나 점유하는 장소에 어떤 물건을 놓아두고나 어떤 물건을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란 가해자가 악의를 가지고 반복적이거나 계속된 일련의 행위의 목표물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한 개 이상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개인이 그러한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한 개 이상의 행위가 법원의 명령이거나 예비적 금지 명령인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최소한 한 개가 보호관찰조건 위반이거나 가석방 조건 위반이거나, 재판 전 석방조건 위반이거나, 보석 석방 조건 위반인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 피해자와 동거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이러한 조항으로 기준에 기소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스토킹범죄가 가중처벌되는 경우 5년 미만의 징역형 또는 10,000달러 미만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가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기간 중에 18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5살, 또는 5살 이상인 경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16,000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5년 미만의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조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경우 다른 조건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른 사람을 스톱킹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스톱킹 행위의 피해자와의 어떠한 접촉도 하지 말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사회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고인을 평가할 수 있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사회상담을 피고인의 비용으로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그만둘 것을 요구받았거나 접촉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피해자가 위협받거나 놀라거나 협박받거나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일응 추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 조항에 의하여 가해지는 형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다른 범죄, 또는 법정모욕죄에 부과되는 형에 부가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미시간주의 경범죄 처벌 조항을 보면 위와 같은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1,000달러 미만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5. 미국의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시스템

법무부 사이트의 “20)연방정부 스토킹 범죄 참고자료” (Federal Stalking Brochure 2021)” 라는 자료를 보면 스토킹 범죄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스토킹 범죄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주의사항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p>IF YOU ARE IN DANGER FIND A SAFE PLACE TO G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ce/Fire Department ✓ Homes of friends or relatives preferably unknown to the stalker ✓ Family crisis shelters ✓ Crowded public buildings or places <p>PROMPTLY NOTIFY POLICE AGENC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ve an accurate description of the stalker, his or her vehicle, address (if known) and a recent photograph if you have one. ✓ Notify security personnel in apartments and/or appropriate personnel at your work place. ✓ Ask law enforcement about security measures they can initiate. Some agencies have cell phones programmed to dial 9-1-1 and VARDAs alarms available for stalking victims. "Panic button" alarms can be rented from private security agencies. <p>As well as helping to protect you, law enforcement can keep an independent record of your complaints, which may help you get a protection order from the court or demonstrate that an existing order has been violated.</p> | <p>DOCUMENT STALKING BEHAVIOR</p> <p>It is vitaly important to keep a record of stalking incidents which may support a criminal prosecu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ord dates, time of day and places of contact with the stalker. ✓ Log any telephone calls and save answering machine messages. ✓ Save any correspondence from the stalker, including the envelope. ✓ Document threats in detail. ✓ Provide names and addresses of witnesses to any of the stalking incidents to law enforcement or the criminal prosecutor. <p>OTHER ILLEGAL ACTS</p> <p>Stalking itself may not be the only state or federal crime a stalker commits against you. Has the stalk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saulted you physically or sexually? ✓ Entered your home without your permission? ✓ Damaged or stolen your property? ✓ Traveled across state lines with intent to do harm? ✓ Illegally possessed a firearm or other weapon? ✓ Violated a protection order? <p>Report any of these incidents to law enforcement, who may wish to photograph any injuries to you or damage to your property.</p> | |
| <p>WAYS TO INCREASE YOUR HOME SAFE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tall dead bolts. If you lose the key, change the locks and hide the spare keys. ✓ If possible, install outside lights activated by a motion detector. ✓ Maintain an updated phone number. If possible, have a portable, cordless telephone company security personnel. They can assist you with systems to trace the origin of calls. ✓ Test any threat as legitimate and call police immediately. ✓ Vary the routes you take and limit the time you spend walking. ✓ Tell trusted friends, family and neighbors about the situation. Provide them with a copy or description of the stalker and the car if it is a vehicle. ✓ If you live in an apartment, provide the manager with a picture or a description of the stalker. ✓ Consider carrying a personal alarm that emits a loud sound when activated. ✓ Review your parking arrangements. | <p>HELP IS AVAILABLE</p> <p>If you are a victim of stalking it is normal to feel frightened and vulnerable. The following agencies want to help victims of stalking and other crimes. Seek their help.</p> <p>Police Department's Departmental Police _____ District Attorney's Office _____ Domestic Violence Project _____ New York State Office for Victim Services Coordinator _____</p> <p>NATIONAL ASSISTANCE</p> <p>Domestic Violence Hotline 1-800-799-7233 National Center for Victim Assistance 1-800-421-3247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1-800-368-1001 National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1-800-342-7303</p> | <p>STALKING IT'S A CRIME!</p>  <p>Laws and Other Information for Victims of Stalking</p> <p>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 Justice Forum Victim Assistance Center Room 3000 1000 West 1000 West 1000 West</p> |

20) 미국 법무부 사이트 <https://www.justice.gov/usao-me/page/file/1411076/download> 참조

WAYS TO INCREASE YOUR HOME AND PERSONAL SAFETY

- ✓ Install dead bolts. If you lose the key, change the locks and hide the spare keys.
- ✓ If possible, install outside lights activated by a motion detector.
- ✓ Maintain an unlisted phone number. If harassing calls persist, contact telephone company security personnel. They can assist you with options to trace the origin of such calls.
- ✓ Treat any threat as legitimate and call police immediately.
- ✓ Vary the routes you take and limit the time you spend walking.
- ✓ Tell trusted relatives, friends and neighbors about the situation. Provide them with a photo or description of the stalker and the car he or she drives.
- ✓ If you live in an apartment, provide the manager with a picture or a description of the stalker.
- ✓ Have co-workers screen calls and visitors.
- ✓ Consider carrying a personal alarm that emits a loud squeal when activated.
- ✓ Review your parking arrangements.

HELP IS AVAILABLE

If you are a victim of talking it is normal to feel frightened and vulnerable. Remember, you are not alone. The following agencies exist to help victims of stalking and other crimes. Seek their help.

Police Dept./Sheriff's Dept./State Police/Tribal Police

F.B.I. / A.T.F.

District Attorney/US Attorney's Office

Domestic Violence Project

State Victim Advocate/Fed. Victim-Witness Coordinator

National Assistance

Domestic Violence Hotline:
1-800-799-SAFE (1-800-799-7233)
thehotline.org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1-855-4-VICTIM (1-855-464-2843)
victimconnect.org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1-800-TRY-NOVA (1-800-879-6682)
novanet.org

National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1-303-639-1852
ncadv.org

This brochure may be reproduced.
Revised 8/23/2013

STALKING
IT'S A CRIME!




Laws and Other Information for Victims of Stalking

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
District of Maine

Heather Putnam
Victim/Witness Coordinator
1-800-984-6377

Karen Wotton
Victim/Witness Specialist
(207) 945-0373



[만일 당신이 위협에 처한다면,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경찰서/소방서, 가급적 가해자가 알지 못하는 친구집이나 친척집, 가정불화대피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관공서나 공개된 장소입니다.

[신속하게 경찰에게 신고할 것]

가해자의 인상착의, 가해자의 차량, 주소(알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정확하게 경찰관에게 진술하고 가해자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사진을 경찰관에게 제출해 주세요.

만일 당신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나 적절한 직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해 주세요.

경찰관에게 어떤 신변보호조치를 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어떤 기관은 피해자가 119나 경보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위급한 경우 누르는 버튼”은 개인 사설 보안업체에서 대여가능합니다.

경찰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줄 뿐 아니라 당신의 고소내역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법원으로부터 보호명령을 받으려고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며 현재 가해자가 그러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증거로 남겨주세요]

가해자를 기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토킹에 관한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의 날짜와 시간, 그리고 범피자를 만난 시간을 잘 기록해 두세요. 전화 통화 내역을 저장하고 전화 메시지를 잘 저장해 두세요. 범피자로부터의 어떠한 서신도 잘 보관해 두시고 봉투까지 모두 저장해 놓으세요. 위협이 있는 경우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해 두세요. 스토킹 사건의 목격자 이름과 주소 등을 경찰이나 검찰에 모두 제공하세요.

[다른 불법 행위들]

스토커가 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였는지,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집에 침입하였는지, 당신의 재산을 망가뜨리거나 훔쳤는지, 당신을 해칠 의도로 주 경계를 넘었는지, 불법적으로 자동화기나 기타 무기를 소유하였는지, 보호관찰 명령을 어겼는지 여부에 따라 단지 한 주 또는 연방법 위반행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모두를 경찰에게 신고하세요. 경찰은 당신이 입은 상처, 또는 당신의 물건에 발생한 손해를 사진 촬영해 둘 것입니다.

[당신의 집과 개인 안전을 더 강화하는 방법]

데드볼트를 설치하세요. 만일 당신이 키를 분실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여분의 열쇠를 숨겨 보관하세요. 가능하다면 외부에 움직임감지장치에 의해 켜지는 조명을 설치하세요. 전화번호부에 올려지지 않은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만일 타인이 계속해서 전화를 하여 당신을 괴롭히는 경우 전화 회사에 연락하세요. 전화회사는 발신번호가 무엇인지를 추적하는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위협도 합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바로 경찰에 연락하세요. 길을 다닐 때 동선을 다양하게 하고 오래 걸어 다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믿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 이웃들에게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해 놓으세요. 그들에게 스토커와 스토커가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한 사진을 주거나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세요.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스토커의 사진을 주거나 자세한 설명을 해 놓으세요. 직장 동료에게 전화나 방문객들을 잘 확인하도록 해 놓으세요. 작동시키면 아주 큰 소리를 내는 개인 경보장치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주차공간이 안전한지 여부를 잘 살펴보세요.

[도움이 가능합니다.]

만일 당신이 스토킹의 피해자라면 겁을 먹거나 취약한 상태라고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기관(주경찰서, 군 경찰서, FBI, ATF, 검찰, 주 피해자 보호기관, 연방 피해자 증인 코디네이터)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국가의 도움]

국가가정폭력핫라인(Domestic Violence Hotline)

1-855-799-SAFE(1-800-799-7233), thehotline.org

범죄피해자국가지원센터(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s)

1-855-4-VICTIM(1-855-484-2846), victimconnect.org

범죄피해자 국가지원센터(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s Assistance)
1-800-TRY-NOVA(1-800-879-6682), trynova.org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연합(National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1-303-839-1852, ncadv.org
스토킹. 이것은 범죄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여러 기관들을 법무부 사이트에 연계시켜 놓았으며 필요한 경우 위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써 국가가정폭력핫라인(Domestic Violence Hotline), 범죄피해자국가지원센터(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s), 범죄피해자국가지원센터(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s Assistance),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국가연합(National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이 있습니다.

그럼 각 기관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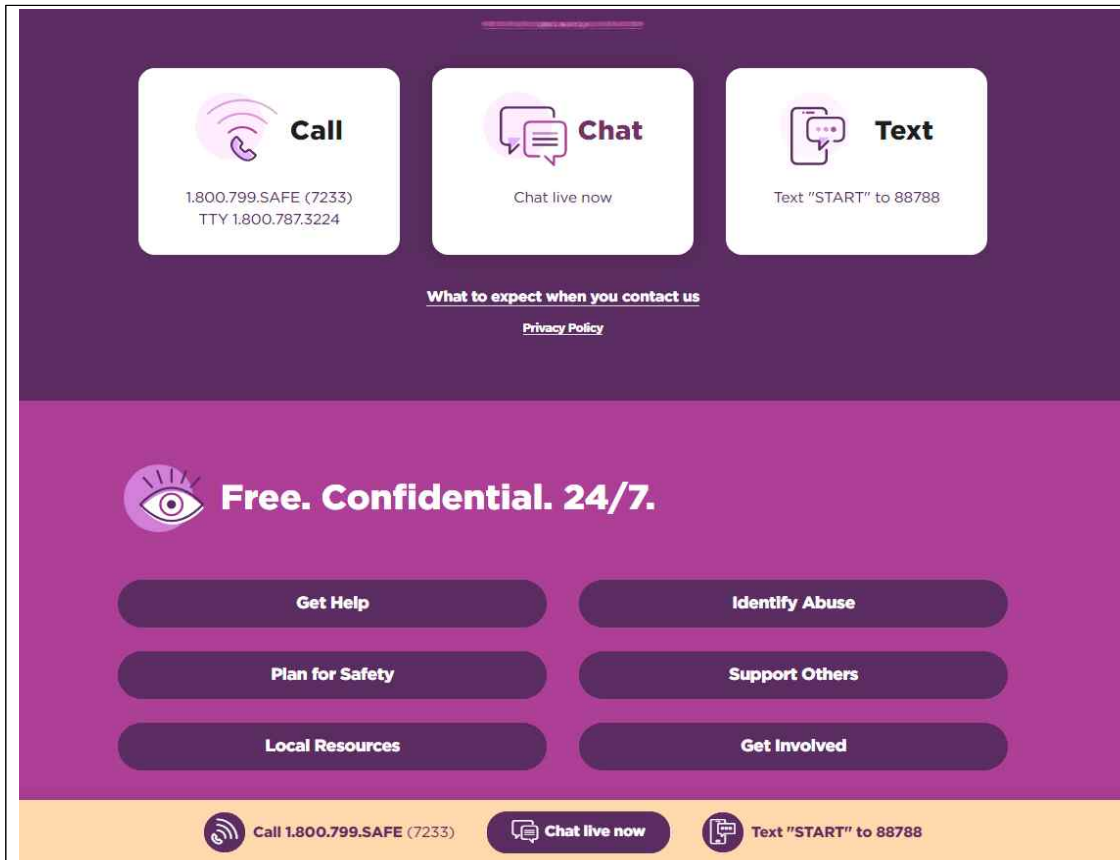
가. 21)국가가정폭력핫라인(thehotline.org)

국가가정폭력핫라인(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은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정폭력핫라인은 1994. 9. 13. 빌 클린턴 정부가 서명한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에 근거하여 창설되었으며 2021. 2. 21. 25주년을 맞이하였으며 2019. 5. 8. 기준으로 500만의 응대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22)미국 아동 및 가족부의 가족 및 청소년 서비스부 사이트에 등록된 자료를 보면 가정폭력 방지 서비스 법(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Act, FVPSA)는 24시간 전국 무료 핫라인 운영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핫라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는 도움을 주기 위한 직통전화이며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 그리고 가족과 가족 구성원들, 세대원, 그리고 가정폭력 금지 운동가, 공무

21) 가정폭력 핫라인(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https://www.thehotline.org/>)

22) <https://www.acf.hhs.gov/fysb/programs/family-violence-prevention-services/programs/ndvh>



원, 법집행기관과 일반 대중들에게 각종 정보와 도움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핫라인은 전국 전화번호 1-800-799-SAFE(7233) 또는 TTY 1-800-787-3224 또는 (206) 518-9361(농아인용 화상 전화)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미국 50개 주, 푸에르토리코, 괌 및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기관에 서비스 소개를 제공하며 핫라인 웹사이트에서 이메일로 핫라인에 접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연령 또는 장애(청각 장애인 및 난청 포함)에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전화 통역 서비스를 통해 170개 이상의 언어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핫라인은 위기 개입, 가정폭력교육, 안전계획수립을 도와주며 지역대피소와 같은 서비스제공 업체에 직접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 국가가정폭력핫라인 사이트에서는 ‘23)스토킹 범죄로부터의 신변 안전 보호 계획’ 이라는 제목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3) <https://www.thehotline.org/resources/stalking-safety-planning/>

Stalking Safety Planning

By Dana, a Hotline Advocate



Stalking can be one of the most difficult abuse tactics to safety plan around, especially when police involvement and protective orders are either not possible or not helpful in stopping the abuse. Stalking prevents the victim from being able to cut off contact with the abusive partner, which makes it much more difficult for healing to begin. Oftentimes, stalking causes the victim to experience so much fear and anxiety that they return to the relationship because that seems like the only solution to get the abusive partner to stop.

According to [statistics](#) published by the National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76% of women murdered by an intimate partner were stalked first, while 85% of women who survived murder attempts were stalked. Additionally, 89% of femicide victims who had been physically assaulted before their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신변 안전 보호 계획을 만드는 것은 경찰의 개입이나 보호 명령들이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해야 하는 것이므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시 피해자가 가해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하는데 그것은 '치유'라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종종 스토킹 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다시 가해자와 예전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스토킹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어 다시 가해자와의 예전 관계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방지국가연합이라는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친근한 연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여성의 76%가 처음 단계에서는 스토킹으로 시작하였고 또한 죽지 않고 살아난 여성의 85%가 스토킹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살해당하기 전 육체적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의 89%는 살해당하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 신변 안전 보호 계획에 어떠한 선택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선, 스토킹이란 무엇이며, 당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스토킹이라 함은 가해자가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놀라게 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하는 어떤 행동들의 패턴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의 '스토킹 및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스토킹은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다른 사람의 집이나 회사에 나타나거나, 전화하여 괴롭히거나, 원가를 써 놔두거나, 물건을 놔두거나, 또는 개인 재산을 파손하는 등 괴롭히거나 또는 위협의 행동을 계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는 외적인 위협이 수반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은 상해나 살인의 전조행위일 수도, 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들이 가학적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떠난 후에

스토킹을 당하곤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낯선 사람, 지인, 친척, 또는 친구보다는 남편이나 전남편으로부터 스토킹을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만일 당신이 학대를 당하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당신의 신변 안전 계획 작성 시 스토킹 당할 위험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에 대한 법적 정의는 미국의 각 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일 스토킹을 현재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속한 주의 법을 알기 위해 그 지역의 법집행가나 법률 조연자 등을 만나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 당신이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가해자 행동에 대한 증거를 많이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서 가능한 최대한도로 많이 기록해 놓으세요. 그것은 당신이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토킹 범죄에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과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몇몇은 더 명백히 위협적인 행동들이며, 다른 몇몇은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죄가 되지 않거나 굳이 따로 언급할 정도까지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은 아무리 작은 것들이라도 모두 기록해 두세요. 스토킹 범죄는 육체적으로 또는 디지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반복적으로 원치 않는 전화를 계속하거나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것, 원치 않는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 따라다니거나 영탐하는 것,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신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집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나타나는 것, 당신이 자주 가는 곳(집, 직장, 학교 등)에 운전해 가거나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싫어하는 물건들이나 선물들, 꽃 등을 당신이 볼 수 있도록 놔두거나 송부하는 것, 당신에 관한 정보나 소문들을 공개된 인터넷에 포스팅하거나 퍼트리는 것, 또는 입소문을 퍼트리는 것, 당신의 사유지를 쳐다보는 것(쓰레기통, 편지통, 자동차 포함), 당신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당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당신을 사진 찍는 것, 당신의 집이나, 자동차, 또는 다른 재산을 망가뜨리는 것, 당신의 휴대폰 통화나 이메일, 소셜 미디어, 또는 다른 컴퓨터 사용을 추적 관찰하는 것, 당신을 추적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나 GPS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 친구, 또는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것, 공공기관의 정보, 온라인 검색, 개인 탐정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신에 관한 정보를 찾는 것, 당신의 친구들, 가족, 이웃들, 또는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위 기재 사항들은 스토커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스토커는 피해자에게 가장 많은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폭행에 대한 위협은 암시되어 있는 것일 수도, 노골적으로 명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만일 스토커의 행위들이 당신이 거주하는 주에서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스토커의 행동은 여전히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며 당신이 스토커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해서 스토커의 그런 식의 행동이 합당하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절대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토키가 당신을 협박하고 놀라게 해서 다시 힘을 (되)찾고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기술인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현재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인 스토킹에 대한 일반적인 신변안전에 관한 팁을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당신이 매일 다니는 길을 바꾸세요(다른 은행을 사용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쇼핑을 하거나, 회사나 학교 다니는 길로 평소와 다른 길을 사용하거나 당신이 평소 자주 다니는 길을 바꾸세요). 혼자 여행을 다니지 마세요. 친구들을 가능한 한 많이 이용하시고 가급적 공개된 장소에 있으세요. 친구나, 가족, 이웃들, 집주인, 학교, 보육시설, 직장 동료, 상사에게 스토킹에 대해서 알려 놓으세요. 스토키가 앞에 있거나 또는 당신이 위험에 처할 것 같아 걱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암호를 만들어 놓거나(당신이 친구나 가족구성원에게 암호를 문자로 보낼 때 그들이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사전에 만들어진 계획대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계획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주택의 보안 강화(데드볼트 설치, 창문 잠금장치 설치, 눈에 보이는 보안 카메라 설치, 동작 확인 시 작동되는 현관문 조명, 집안 보안시스템 설치), 경찰에게 신고하고 스토키로부터 보호명령을 받는 것(이것은 스토킹 범죄를 막지는 못할 것이나,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 지역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스토키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안전 보호 계획은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스토키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소셜 미디어에서도 차단할 것(그리고 당신의 친구에게도 스토키를 차단하고 스팸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세요), 이메일 관리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차단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이메일 주소도 바꾸고 새로 만들 것, 모든 기기에서 인터넷 보안을 강화하고 스파이웨어가 있는지 점검하며 당신이 거주하는 주에 사이버스토킹과 온라인 괴로움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편, 스토키로부터의 어떠한 문자나 이메일, 음성메일, 또는 편지들을 모두 다 저장해 놓는 것, 그리고 스토키가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차단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스토키가 당신에게 복수하고자 할 가능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토키는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스팸 계정을 만들어서 당신과 친구되기를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예전 휴대폰 번호를 계속 살려두되 스토키의 전화를 바로 음성메일로 가게 하도록 놔두고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받지 않거나 또는 당신이 당신은 과거 이메일 주소를 그대로 살려두되 그들이 보내는 어떤 이메일에도 응답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신변안전계획에 어떤 것을 넣던지 말지 간에 당신이 스토키에게 어떤 반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최초 스토키에게 당신에 접촉하는 것을 그만둘 것을 요구한 후에

는 절대로 그들에게 응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들에게 스토킹을 그만두라고 계속 말함으로써 스토킹을 그만두게 설득할 수 있을 가능성을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스토킹은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당신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스토커가 당신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게끔 해 주면 당신에게 접촉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공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당신을 또 스토킹 할 수 있게 되도록 시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러한 상황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자들은 카리스마가 있고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합니다. 일단 당신이 스토커에게 접촉을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다면 더 이상의 대화는 하지 말고 함께 만나는 것도 그만두어야 하며 스토커들로부터 당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모두 시도했음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더 창의적인 신변 안전 보호 팁을 알려드립니다. 당신 집 창문을 커튼과 빛 가리개로 항상 가려놓거나, 낮에 다른 시간 때에 다른 공간에 불을 무작위로 켜 놓는 습관을 들여서(또는 램프에 타이머를 맞추어 놔도 됨)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당신이 집에 있다는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가해자에게 인식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신 집의 마당이나 창문에 보안 시스템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눈에 보이게 붙여 놓고 그 표지판에 이웃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리거나, 당신 집주인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 놓으세요. 만일 당신이 스토킹 당하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당신 거주지를 자주 오는 수상한 사람을 보았다고 말하고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말해 놓으면 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스토커의 차량의 연식, 모델, 자동차 번호판 번호를 당신의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알고 있어 만일 스토커를 보면 당신에게 연락하여 경고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당신의 집주인이나 이웃에게 무작위로 집에 들러서 별일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은행이나 병원에 당신의 정보나 계정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믿을만한 친구에게 열쇠를 주고 느닷없이 집에 들러 화초에 물을 주게 하거나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스토커가 스토킹하는 것을 잡게 될 가능성을 높임), 벨이나 초인종을 창문이나 문에 붙이거나, 직장 동료에게 당신한테 온 전화목록을 봐 줄 것을 요청하고 스토커를 조심하고 있는 당신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거나, 만일 스파이웨어가 설치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 당신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에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설치하거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한꺼번에 새로이 마련하거나, 스토커가 집 근처로 등장하는 시간의 패턴을 알게 되었다면 경찰관에게 그 주변을 순찰돌수 있는 경찰관을 보내줄것을 요청하거나(만일 당신이 수사당국에 공식적으로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그럴 수 없다면 911에 전화하여 익명으로 당신 거주지의 수상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현재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신변안전 계획 작성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800-799-7233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조력자와 향후 어떤 도움과 지원을 받을지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은 괴로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나. 24) 범죄피해자배움센터(victimconnect.org)

두 번째로 범죄피해자배움센터 사이트를 검색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이트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자료가 확인되는바 관련 내용을 번역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배움센터의 영문명은 Victim Connect Resource Center이며 이 기관에 대해 a place for crime victims to learn about their rights and options confidentially and compassionately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원문의 의미를 살려 ‘범죄피해자배움센터’로 번역함)

Call or Text 1-855-484-2846 Chat Online Quick Exit If you are in immediate danger, CALL 911. Accessibility Tools

Victim Connect resource center

Get Help Learn Resources Safety Planning About Us

VISIT US WEEKDAYS FROM 9 AM- 5 PM EST

We are a weekday helpline that provides services by phone, chat or text.

Learn More

The VictimConnect Resource Center is a referral helpline where crime victims can learn about their rights and options confidentially and compassionately.

VictimConnect Resource Center (VCRC) is a weekday phone, chat, and text-based referral helpline operat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Services are available for all victims of crime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territories. Visitors to the hotline receive strength-based and trauma-informed services and referrals in over 200 languages. The Victim Assistance Specialists receive extensive training and

범죄피해자배움센터는 범죄피해자들이 그들의 권리 및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비공개로 진솔하게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평일에 전화나 채팅, 문자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미국령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 센터 내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도움, 정보,

24) 범죄피해자 국가센터 <https://victimconnect.org/>

등을 제공하며 이것들은 방문자들이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서적, 법적, 재정적 결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도움을 받으세요.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1-855-4VICTIM(855-484-2846)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채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센터의 서비스, 피해자의 권리, 그리고 다른 형태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배워보세요.

또한 위 센터에서는 “스토킹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스토킹범죄는 일련의 행동패턴입니다. 일련의 행위들은 그 자체로는 해가 없거나 범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러한 행위들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당신이 어디 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미국 50개 각주, 워싱턴 D.C., 미국령 영토, 그리고 연방정부의 법에 이거 모두 범죄가 됩니다. 스토킹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종종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란 어떠한 행태들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 반복해서 전화하는 것,
- 당신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거나 나타나는 것,
- 당신이 원치 않음에도 선물이나, 편지, 문자, 이메일을 보내는 것, - 당신의 집이나 자동차, 또는 다른 부동산을 망가뜨리는 것,
- 스파이웨어 등을 사용하여 당신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사용을 모니터하는 것,
- 몰래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GPS를 사용하여 당신이 가는 곳을 추적하는 것,
- 당신의 집이나 학교, 직장 근처로 차로 드라이브하거나 어슬렁거리는 것,
-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 친구들, 또는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 당신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추적하거나 놀라게 하는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
- 당신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아이들이나 가족, 또는 친구들을 이용하는 것

당신이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아 피해자의 현재 불안한 정서적 상태가 스토킹에서 비

롯된 것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만일 당신이 스토킹을 당해왔다면,
- 당신은 스토키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격받기 쉽다고 느끼거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의기소침하게 느끼거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끼거나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짜증이 나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불안하거나 과도하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 플래시백 현상이 있거나 생각이나 감정들, 기억들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 혼란스럽거나, 짜증나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 스토키를 만나게 되는 것이 두려워 일이나 학교를 빼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일반적인 또는 특히 선호하는 사회관계망의 습관을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 하였습니다.

- 모든 사람들에게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우주적인 방법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행동들은 당신이 당신 삶을 다시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911에 전화하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과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 **다른 사람에게 잘 알리세요.** 믿는 친구들이나, 가족, 이웃들, 동료들, 그리고 당신의 인사부서에서 의심스러운 활동들에 대해 잘 감시해 달라고 말해 놓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인 양 행세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정보를 실수로 주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옹호자와 연대하세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옹호자는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기관, 경찰서, 검찰청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옹호자는 당신이 사는 지역의 스토킹법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고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기타 서비스 센터에 연계시켜 줄 수 있으며 안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모든 사건들 기록하세요.** 스토키와 조우하게 된 경험들을 모두 다 기록해 놓으세요. 전화를 해서 끊어버리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마주치는 것들도 모두 기록하세요. 그리고 모든 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전화 통화 내역을 모두 저장해 놓으세요.
 - 1,350만명의 사람들이 매년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스토킹이란 무엇일까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사법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현재 가장 적절한 정의를 본다면, 스토킹은 특정인에 대한 일련의 행동패턴으로 합리적인 일반인이 자신들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일반인이 상당한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행동패턴을 말합니다.

- 만일 당신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라면, 스토킹 관련 사건들과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당신이 형사나 민사 소송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정보를 녹음하는 것은 보호명령 신청, 이혼과 자녀 양육권 소송, 형사기소를 위해 관련 행위들을 기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당신 개인의 사건을 추후 기억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며 그것은 당신이 사건을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스토킹 사건 일지는 스토킹 관련 행동들을 녹음하고 기록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사건을 신고하는데 신고한 기관과 사람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배지나 신분증 일련번호도 적어 놓으세요. 만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신고를 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러한 정보들은 미래에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거나 무심코, 우연히 스토킹자가 보게 될 수 있으므로 스토킹자 보지 않기를 원하는 어떠한 정보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스토킹 사건일지에 기록할 사건들과 행동들의 예를 들어보면 괴롭힘, 계속된 전화 통화, 문자들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당신을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편지나 선물을 보내는 것, 당신을 추적하는 것, 당신의 재산을 망가뜨리는 것, 당신에 대한 소문들을 퍼뜨리는 것, 당신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들이나 사진들을 올리는 것, 당신인 척 하는 것, 당신의 계정을 해킹해 들어가는 것, 당신이나 당신과 가까운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을 위협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 스토킹자의 사진이나 접근금지명령서의 사본, 경찰서 서류, 그리고 다른 관련 서류를 스토킹 사건일지에 부착하세요. 당신의 스토킹 사건일지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어디에 스토킹 사건일지를 보관하였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스토킹 사건일지를 전자정보 형태로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스토킹자가 당신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접속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행위들을 문서로 기록해 두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조력자들은 당신에게 도움과 당신에게 지원가능한 방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변안전에 관한 계획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²⁵⁾스토킹 사건일지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스토킹 사건일지

| 날짜 | 시간 | 사건 내용 | 장소 (물리적 장소, 사용된 기술, 온라인 플랫폼) | 목격자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기재) | 증거 첨부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물건 등) | 고소장 접수 내역 (접수자, 사무실 또는 기관 이름, 배지 또는 신분증 번호) |
|----|----|-------|---------------------------------|-------------------------|---------------------------------|---|
| | | | | | | |
| | | | | | | |

그럼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모든 접촉을 끊으세요.** 때때로 이런 말은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당신이 스토킹에게 그만둘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해도 스토킹의 전화나 문자에 응대하지 않도록 노력해보세요. 스토킹과의 어떠한 접촉도 스토킹이 계속 그 행동을 하도록 격려할 뿐입니다.
- **위험을 진지하게 여기세요.** 당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스토킹은 자살, 또는 자해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당신과 계속 접촉하려고 하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당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 **안전 계획을 세워보세요.** 당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개인맞춤형 안전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것에 관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옹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보세요.

- [26)신변 안전 보호 계획]**
- 신변 안전 보호 계획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는 개인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유용한 신변 안전 보호 계획은 당신이 범죄를 경험하고 난 후 불안정한 상황을 통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신변 안전 보호 계획을 만들 때에는 가족 구성원들, 친구들, 개인적인 저축성 예금계좌, 사용 가능한 교통수단, 육아와 같이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또는 모든 자원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변 안전 보호 계획을 만들 때에는 당신의 개인적인 단기 및 장기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가령 내가 현재 이곳에 계속 머무를 방법을 찾고 싶어하는지, 나는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준비가 된 것인지, 만일 상황이 바뀐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25) 스토킹 사건 일지(STALKING INCIDENT AND BEHAVIOR LOG)
https://www.stalkingawareness.org/wp-content/uploads/2018/07/SPARC_StalkingLog_Instructions_2018_FINAL.pdf

-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토론을 하여 가능하다면 예비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비록 신변 안전 보호 계획이 당신과 당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개인화된 것이라고 해도 피해자와 그러한 범죄를 극복한 사람들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아래와 같은 안전 조치들이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도움을 구하는 것** : 믿을 수 있는 가족구성원, 친구들, 선생님들, 또는 이웃들에게 당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신호나 단어들을 미리 만들어놓고 그들에게 알려놓으세요.
- **중요한 물건들을 주변에 놔두세요.** 당신이 급하게 떠나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돈이나, 약품들, 전화번호들,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항상 주변 가까운 곳에 놔두세요. 당신은 가방을 숨겨둘 수 있고, 또는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이러한 중요한 물건들을 당신의 친구에게 숨겨놓거나 맡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미리 정해 놓으세요.** 당신이 급하게 떠나야 할 경우 가야 할 안전한 장소에 대해 생각해 두세요. 그것은 친구집, 믿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집, 또는 지역 안전가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그곳으로 떠날지 미리 연습해 두어야 합니다.
- **당신의 일상 루트를 바꾸세요.** 당신이 다니는 길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당신이 회사나 학교에 가는 규칙적인 루트를 정기적으로 바꾸세요.
- **당신의 집을 지키세요.** 당신 집의 문들의 자물쇠를 바꾸는 것, 새로운 전화번호로 바꾸는 것, 알람에 불을 켜는 것, 그리고 당신이 집에 없을 때 창문을 달는 것을 고려하세요.
- **법적 대안들에 대해 공부해 놓으세요.** 가해자에 대한 보호명령, 접근 금지 명령, 양육권조정과 같은 대안들, 민사적 구제방안들과 같은 법적 대안들을 찾아보세요.
- **전자정보를 보호하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자정보 보호 계획’를 방문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 **당신의 자녀들도 준비시키세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만일 긴급상황, 예를 들어 집 안에서 위험이 발생한다면 어디에 숨어야 할지, 또는 경찰에 전화하는 방법, 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지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하고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모든 사람들이 범죄에 대해 같이 응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돌보기’, ‘대처기술’도 연습하세요. ‘자기돌보기’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클릭하세요.

※ 27) 자기돌보기(self-care)

‘자기돌보기’란 단어는 우리들의 전체적인 안녕과 개인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이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행동과 태도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자기돌보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상황들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육체적, 정서적 활동들도 모두 포함합니다. 자기돌보기 개념은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에서 치유와 회복에 중요한 개념이면서 동시에 현재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인 건강과 밸런스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다.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연합(ncadv.org)

위 기관은 콜로라도 주의 덴버에 위치한 기관으로(600 Grant, Suite 750 Denver, Colorado 80203)에 위치한 기관입니다. 위 기관은 가부장제, 특권,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계급차별주의와 같은 가정폭력을 초래하는 조건들을 타파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범죄피해자를 돕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위 기관의 미션에 대한 원문 참조함)

위 기관 사이트에서 스토킹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게시해 놓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이트에서 스토킹으로 검색하면, 2017. 1. 30. “28) 스토킹범죄에 관한 가이드 : 16개의 중요한 통계와 당신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2017년)은 새해 첫 달로써 전 국가적인 스토킹 자각의 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스토킹은 연방정부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개인, 그 개인의 직계가족 구성원, 배우자나 친분이 두터운 상대방에게 죽음이나, 또는 심각한 신체의 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공포를 갖게 하는 것, 또는 분명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럼, 미국 내에서 이런 행동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가요. 여기에 당신이 이해해야 할 놀라운 두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26) 신변안전보호계획(국가 가정폭력 핫라인, 스토킹 범죄에 관한 설명 자료 중)

<https://victimconnect.org/safety-planning/>

27) <https://victimconnect.org/learn/self-care/>

28)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연합의 스토킹 범죄에 관한 가이드

<https://ncadv.org/blog/posts/quick-guide-to-stalking-16-important-statistics-and-what-you-can-do-about-it>

1. 2011 조사에 따르면 전년도에 510만명의 여성, 그리고 240만명의 남성이 스토킹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2. 미국에서 여성 6명 중 한 명, 그리고 남성 19명 중 한 명이 그들의 일생에서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3. 상당히 많은 경우, 스토킹은 피해자가 아는 사람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4명 중 3명은 어느 정도 스토킹을 알고 있습니다. 스토킹과 피해자의 가장 일반적인 관계는 현재, 또는 과거에 친밀했던 연인사이입니다.
4. 66%의 스토킹 피해여성은 현재 또는 과거의 친밀했던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5. 현재 또는 전 남편, 동거하는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여성 중 81%는 그들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하였고, 31%는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 피해자가 많이 분포되어있습니다.
6. 18세부터 24세 사이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7. 스토킹은 50개의 모든 주에서 범죄이지만, 만일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1/3의 주만 이것을 중범죄로 분류하였습니다. 이것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보호를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그리고 살인]

스토킹은 종종 다른 형태의 폭력 범죄의 지표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살인 사건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8. 친분 있는 연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여성의 76%는 처음에 스토킹을 당하였고, 살해를 당하려다 살아남은 여성의 85%가 스토킹을 당하였습니다.
9. 살해당하기 전에 육체에 폭행을 당한 후 살해당한 여성 중 89%는 살해당하기 전 스토킹을 당하였습니다.
10. 살해당한 여성의 54%는 스토킹으로부터 살해당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영향]

스토킹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재정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합니다.

11. 스토킹 범죄피해자 7명 중 1명은 스토킹 피해 때문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2.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비율의 의기소침, 걱정, 불면증, 그리고 사회적 부적응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13. 피해자의 86%는 그들의 심성이 스토킹 때문에 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4.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37%는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을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18%는 하나의 기준만 모자라는 외상후 스트레스 상태가 됩니다.

- 15. 스토킹 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하였습니다.
- 16. 스토킹 범죄 피해자 8명 중 1명은 스토킹 범죄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중 절반 이상은 5일이나 그 이상의 근무일 동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스토킹 피해자들을 도와 상황을 그들 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가요. 여기에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방법이 있습니다.

- 당신이 거주하는 주의 입법자들이 스토킹에 관한 법률을 더 촘촘하게 만들도록 격려하여 스토킹 범죄가 더 원활하게 기소되고 더 심각한 범죄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입법자들이 가정폭력에 관한 연방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국회의원들이 여성들에 대한 폭력 방지법에서 의거 설립된 스토킹과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금전적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지원해 주세요. 건강한 관계,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그리고 가능한 자원 등을 포함한 적절한 커리큘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선생님들과 학교 카운슬러, 체육 선생님들이 현재 폭력적인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나 10대 청소년들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역 학교와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하세요. 그렇게 하여 그들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그리고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들에 관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세요.
- 당신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스토킹 범죄 예방과 도움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세요.

만일 당신 또는 당신이 아는 사람이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스토킹 방지 자원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온라인 사이트인 범죄피해자 도움 사이트에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연결 전화’ 855-4-VICTIM(855-484-2846)에 전화하세요.

6. 미국 일선 경찰서에서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

노스 캐롤라이나의 스토킹에 관한 법령을 보면 스토킹은 “위험을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공포로 몰아 넣는 원치 않는 모든 접촉”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된 시각적, 육체적 접촉, 말과 서신, 숨겨진 위협들, 그리고 동의 없는 대화, 또는 이러한 방법들의 조합을 모두 포함한

다” 고 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29)샤롯데 경찰서 사이트에 게시된 스토킹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면 미국에서는 여성 12명 중 1명은 일생에서 스토킹을 당하며 45명의 남성중 1명은 일상에서 스토킹을 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인 간 스토킹 사건을 포함하여 스토킹이 지속된 기간은 2년 2개월로 길어졌습니다. 스토킹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그들의 안전과 삶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위협이 언제 폭력적인 현실로 다가올지 모른 채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은 높은 불안감, 심각한 우울증, 사회 역기능, 불면증을 경험하게 되며, 그것은 일상생활의 심각한 붕괴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샤롯데 대학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된 글 중 “스토킹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과 진실들” 라는 스토킹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들과 현실들에 대한 내용도 참고할만 합니다.

[스토킹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과 진실들]

- 믿음 : 유명인들만 스토킹을 당하다.
- 현실 : 미국에서 매년 140만 명의 사람들이 스토킹을 당합니다. 우리는 미디어에서 유명인들에 대한 스토킹 사건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들의 다수는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 믿음 : 스토킹을 무시하면 곧 스토킹이 사라질 것이다.
- 현실 : 스토킹자들은 좀처럼 “그냥 그만두지” 않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킹자들의 행동들은 더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피해자들은 스토킹 행위를 멈추기 위해 옹호자들, 법집행관(경찰, 검찰, 보호관찰소 등), 그리고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멈추기 위해 관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믿음 : 스토킹은 오싹하긴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 현실 : 스토킹은 오싹하고 위험합니다. 연인관계였던 남자로부터 살해당한 4명의 여성 중 3명은 살인자로부터 이전에 스토킹을 당해왔습니다.

29) 관련법령

<https://mail.google.com/mail/u/0/#starred/FFNDWMkKhKkMWpPMdbZCMxTTShPgqzTI?projector=1&messagePartId=0.1>

* 본 저자의 친구인 Johnson Freddy(FBI NA 278기)이라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샤롯데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2022. 2. 5.에 본 수사관에게 관련 법령을 이메일로 전달해 주어 이를 논문에 기재하여 참고함

30) 샬럿 대학(charlotte university) 인터넷 사이트

<https://police.charlotte.edu/safety/what-if-i-am-being-stalked/stalking-myths-and-realities>

- 믿음 : 스토킹은 짜증나기는 하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 현실 : 스토킹은 50개 모든 주와 워싱턴 D.C., 그리고 연방정부의 법률 하에서 모두 불법입니다.
- 믿음 : 당신은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스토킹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 현실 : 지금 당신의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당신을 주변에서 따라다니고 그래서 당신이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스토킹입니다.
- 믿음 : 현대 감시장비들은 너무 비싸고 복잡해서 대부분의 스토커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현실 : 스토커들은 30달러라는 적은 돈으로 감시 장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를 구입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모든 움직임을 컴퓨터에서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 믿음 : 만일 당신이 스토커와 직면한다면 그는 도망가버릴 것이다.
- 현실 : 스토커들은 비이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스토커를 직접 만나거나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7. 미국 검찰청에서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

본인은 윌리엄 앤 메리 로스쿨이 위치한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 거주하면서 논문 작업을 하였던바 본인 거주하였던 31)버지니아주 검찰청 사이트에서 스토킹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한 남자가 여자를 스토킹하고 납치하여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필드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스토킹하고 납치하여 13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버지니아주의 알렉산드리아의 스프링필드에서 한 남자가 오늘 주를 넘는 스토킹과 가정폭력, 그리고 탄약을 소지한 흉악범으로 총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남 퀘크 후앙(41세)은 2013년 12월 하순경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 퀘크 후앙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을 게시하겠다고 위협하는 일련의 메시지를 전 여자친구에게 보내면서 괴롭힘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 여자친구가 돈을 주지 않자 남 퀘크 후앙은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고 폐이

31) 버지니아 검찰청

(THE 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https://www.justice.gov/usao-edva/pr/springfield-man-sentenced-13-years-prison-stalking-and-kidnapping-woman>

스복 측에서 사진을 내려도 그는 계속해서 다시 사진을 올렸습니다. 남 퀘크 후앙과 그의 공범인 코아 당부 후앙은 2014년 1월 그녀를 스토킹하기 위해 버지니아에서 메릴랜드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에 걸쳐 그녀의 집을 침범하고 그녀의 중요한 개인물건을 훔쳐가는 것도 모두 다 계획하였습니다.

2014년 1월 26일에 코아 당부 후앙은 그녀의 페이스북을 보았고 워싱턴 D.C.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아 당부 후앙은 남 퀘크 후앙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그 나이트클럽으로 가서 그녀가 차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나와 차를 타고 떠나자 그들은 그녀를 계속 따라갔고 그녀가 신호에서 멈추자 남 퀘크 후앙은 그녀의 차량으로 다가가 그녀에게 총을 보여주며 차에 태워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를 차에 태웠고, 차 안으로 들어온 남 퀘크 후앙은 그녀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하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연방배심원은 코아 당부 후앙 주를 넘은 스토킹과 공모혐의로 기소하였고 2017년 7월 21일 그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 미국 버지니아주에서의 스토킹에 관한 주요 판결례

본인의 지도교수로 있었던 제니퍼 스티븐스에게 본건 훈련과제에 관하여 버지니아주의 주요 판결례를 문의하여 확인한바 두 개의 스토킹에 관한 판결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판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32)뱅크 vs. 버지니아 주 정부(ALFRED BANKS JR v. COMMONWEALTH OF VIRGINIA, 2017, 795 S.E.2d 908, 67

32) 뱅크 vs. 버지니아 주 정부(ALFRED BANKS JR v. COMMONWEALTH OF VIRGINIA, 2017, 795 S.E.2d 908, 67 Va.App. 273.)

<https://1.next.westlaw.com/Document/I3c55e6f0f2d411e6b79af578703ae98c/View/FullText.html?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62af0000001803000f46887474a9b%3Fppcid%3D6e7232114590401bbe9a6b62e34fd52f%26Nav%3DCASE%26fragmentIdentifier%3DI3c55e6f0f2d411e6b79af578703ae98c%26parentRank%3D0%26contextData%3D%2528sc.Search%2529%26transitionType%3DSearchItem&listSource=Search&listPageSource=f413d26551b7ede31b800e8521484e2c&list=CASE&sessionScopeId=9f14b5eb62dcddef54078a038b98e5bd710062dd89c87f0239eed56a2260b3de&ppcid=6e7232114590401bbe9a6b62e34fd52f&originationContext=Smart%20Answer&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28sc.Search%29>

Va.App. 273.)

버지니아의 주도 리치먼드의 항소 법원 판결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인 레일리 머천트는 스토킹 경범죄로 지방순회법원에 기소되었는데 항소하여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녀의 직장 주차장에 와서 피해자가 그녀의 차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왔고 그녀를 차량 문을 잡고 “왜 나랑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거냐!” 며 소리를 쳤고,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피고인은 경찰에 그는 더 이상 그녀와 접촉하지 않겠다며 자신을 변호하였지만 그는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녀가 자신의 의사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접촉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요주장은, 법원이 기존 피해자와의 접촉사실은 본건 범행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본건 범행의 증거로 인정해 버린 사실(피고인은 1990년대의 피해자와의 접촉은 본건 범죄사실인 2014년도 범행의 요소에 해당될 수 없음에도 위 사실의 증거로 판단한 사실), 따라서 그 증거는 본건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음에도 본건 범행의 증거로 사용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의 주요 판결요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향한 것이었고 그것은 스토킹 경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소한 2회의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였음이 증거로써 충분히 입증되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기존 스토킹 사실을 본건 범행의 사실로 인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바가 전혀 없다, 제출된 증거들이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경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피해자가 죽음, 성폭력, 또는 신체에 대한 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공포심을 갖게 되었음을 입증하기 충분하다, 피고인도 여러 차례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와 접촉하였음을 증언하였다(피고인은 그녀에게 전화를 하거나 결혼해 달라는 편지들을 써 주었는데 피고인은 그런 전화나 편지들을 피해자가 그 주를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멈췄으나 피해자가 다시 돌아오자 그러한 행위들은 다시 재개함), 그 이후 피고인은 더욱 집요하게 그런 행위들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는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들이었습니다. 구성요건이 판결문에 구체화된 사건이었습니다.

나. 33) 스테펜 vs. 로즈(Stephens v. Rose, 2014, 762 S.E.2d 758, 288 Va. 150.)

두 번째 사건은 한때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후 여성이 남성에게 대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자신에 대한 보호명령을 청원하였고 이에 남성이 항고한 사건입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증거심리를 실시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의하여 “피해여성이 신체 상해에 대하여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항고하여, 자신이 그녀에게 폭력, 협박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법원이 보호명령장을 발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그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향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고, 그 남성이 그 여성에게 접촉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여성이 이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남성이 인식하였다는 사실은 증거로 입증되었으며, 피해 여성이 남성으로부터의 성폭력이나 신체적 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꼈다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 조금 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그 남성과 그 여성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약 4년 정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그 여성은 그 남성과 헤어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여성의 말에 따르면 그 남성이 감정 변화가 심하였고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순회법원 심리에서 그녀는 “나는 항상 계란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또 어떤 일로 그가 화를 낼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두 사람 간에 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그들은 온라인 채팅으로 잠시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 남성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의사가 운영하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이메일로 보내고 나서 그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그 남성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기적으로 그 여성에게 접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그녀에게 이메일을 수도 없이 보냈고 7번의 온라인

33) 스테펜 vs. 로즈(Stephens v. Rose, 2014, 762 S.E.2d 758, 288 Va. 150.)

<https://casetext.com/case/stephens-v-rose>

메시지를 보냈으며, 두 가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차례 그녀에게 접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녀는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 그가 보냈던 메일 중 2개의 메일에서는 그녀가 그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그가 인식하였던 사실, 그가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던 사실, 그녀가 자신과 대화하기를 그가 애원했던 사실, 그녀가 그와 대화하기를 거부한 것에 대해 그가 비통함을 토로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2013년도 1월 초순경 그는 그녀에게 다시 접근하려고 집요하게 시도하였습니다. 2013년 2월, 그는 오하이오 캔턴에 있는 그녀의 부모님 집을 예고도 없이 방문합니다. 그 여성의 아버지가 6시 20분에 회사에 가려고 하는 순간 그 남성은 그 집 앞에서 아버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 딸이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물었고 아버지는 더 이상 자신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눈 아버지는 집으로 들어가 911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 남성을 세웠고 그 아버지가 그 남성을 주거침입을 신고하였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남성이 그녀의 부모님을 찾아갔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두려워 현재의 그의 남자 친구가 그녀와 함께 지내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남성은 계속해서 그 여성의 집에 전화하였고 음성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하였습니다. 1월 2일과 1월 9일 사이에 그는 40번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 여성은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으나 그의 음성메시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현재 남자 친구에 따르면 그녀는 그 남자의 전화에 대해 “매우 화를 냈고, 명백히 화가 나 있었으며,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 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현재 남자 친구는 1월 6일 그 남자의 전화를 두 번 받아 그녀의 남편인척 하였습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전화 잘못 걸었다고 말하였고 그녀는 그가 찾고 있는 그 여자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그 남자에게 전화를 계속해서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또한 그녀의 회사에서 그녀와 접촉하려고 시도하였습니

다. 그는 그녀의 사무실 번호로 전화하였고 그녀는 거기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그녀의 회사에 1월 8일에 꽃다발을 보냈고 그녀는 꽃다발을 그 남자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1월 9일 그 남자는 새벽 2시와 3시 사이에 그 여성에게 여러 번 전화하였고 오전 7시경에는 그녀의 집 현관문 앞에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는 911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와 주차장에 있는 가해 남성을 체포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두려운 나머지 그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보호명령에 대한 순회법원 심리에서 그녀는 가해 남성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 남성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구성원, 또는 남자친구를 육체적으로 괴롭히거나 괴롭힐 것이라는 협박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그 남성은 그 여성이 자신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인 힘, 위협의 결과가 아님에도 순회법원이 자신에 대한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스테편은 법원 심리에서 개리는 로즈가 자신이 물리적으로 로즈를 해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은 없었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폭력, 물리적인 힘, 또는 위협”에 대하여 법은 “다른 사람을 죽음, 성폭행, 또는 신체적 상해에 대해 합리적인 공포를 느끼는 상태로 만드는 폭력, 물리적인 힘, 또는 위협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법령은 “스토킹 행위로 포함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법 § 18.2-60.3(A)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족, 세대원들을 죽음, 성폭행,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1회 이상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합니다.

항소법원은 이 조문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이 사건에서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 2회 이상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

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거나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였다, (3)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죽음, 성폭행, 신체 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인 해악이나 이에 대한 위협은 보호명령서를 발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면 그러한 명령은 피고인의 다른 행위들을 전제로 할 수도 있으며 또한 보호명령은 스토킹에 대한 범죄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보호명령서를 발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믿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행위였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수년 동안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온라인, 소셜미디어,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월에는 피고인은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 그녀의 행방에 대해 물었으며 그녀의 집에 전화하거나, 직장에 전화를 하거나 꽃다발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그녀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가해 남성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스테펀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거나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곧 데이트를 그만두었고, 로즈는 스테펀에게 전화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년 동안 스테펀은 메시지나 이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계속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행동이 피해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도에 자신이 보낸 이메일에서 피해 여성이 더 이상 자신과 접촉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녀를 “화나게”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로즈에게 “두려워 하지 말아” 라고 말할 때 자신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2013년도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딸을 그만 놔두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죽음과 성폭력, 신체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공포심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로즈는 인터넷을 통해 스테편이 자신과 접촉하려는 노력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월에는 사전에 경고 없이 스테편은 갑자기 집요하게 다시 스토킹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예고 없이 오하이오에 있는 그녀의 부모집에 아침에 나타났습니다. 직후에 로즈는 스테편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새벽 2시와 3시 사이에 그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근처의 직장에 꽃을 보냈고 직장 전화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는 오하이오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님에 찾아간 후 일주일 후에 북 버지니아에 있는 그녀의 집에 허락 없이 그냥 찾아갔습니다.

왜 경찰에 전화하였는지에 대해 그녀는 “나는 두려웠다”로 대답했습니다. 왜냐면 그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었고 그 남성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고 스토킹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어떤 해악에 대해 두려워했는지를 특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다른 증거 또한 피해자가 신체에 대한 해악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집을 찾아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매우 화가 나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너무 두려워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그녀의 집에서 같이 머물러 달라고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는 폭력, 물리력, 또는 위협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요소를 명시하였던 판결이었습니다.

Ⅲ.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에서의 스토킹 범죄 사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스토킹 범죄 관련 법령, 미국에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관, 미국 경찰과 검찰의 스토킹에 대한 태도, 대표적인 스토킹 범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스토킹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것인지, 스토킹 범죄가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유형화 또는 도식화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작성해 놓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 산하에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관들은 기관과 피해자간의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피해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피해회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본건 연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사법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Ⅳ. 참고자료

1. 경향신문 인터넷 사이트
「경찰, ‘노원구 스토킹 살해’ 김○○에 사형 구형」 오경민 기자
(2021.09.13.)
2. 한국일보 인터넷 사이트
LIVE ISSUE 김○○ 스토킹 살인사건 사이트 「“큰딸 차단에 앙심, 가족 죽일 수 있다 생각” 김○○이 밝힌 범행」 오지혜 기자(2021. 04. 09.)
3. 나무위키 인터넷 사이트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 (2021. 11. 11.)
4. 한겨레 인터넷 사이트 「“죽겠다” 협박하던 그놈만 살았다, 가락동 스토킹 살인 2년」 이재원 기자(2018. 4. 19.)
5. 시사저널 인터넷 사이트 「제27화 대구 주부 스토킹 살인 사건」 (시사저널 2016년 1월 1371호, 3페이지)
6. 부산일보 인터넷 사이트 「명절에 또 스토킹범죄, 신변보호 받던 여성, 흉기 찔려 중상」 박정미 기자(2022. 1. 30.)
7. 인터넷 사이트
<https://teriousmy.tistory.com/284> [살인자 이야기] 3년간의 스토킹, 그리고 여배우의 죽음
8. 인터넷 사이트
스토킹방지법을 통과시키게 한 사건의 가해자 <리처드 팔리> 사건
<https://blog.naver.com/celibate/222594201998>
9. 인터넷 사이트
<https://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21500056>
「브룩 쉴즈, 스토킹 고소 “두 딸에게 박제된 동물 선물” 30년 동안..」
10. 인터넷 사이트 「 무려 30년 동안? 할리우드의 소름 돋는 스토킹 사례들」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4741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사이트[법률 제1808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
12. 대한민국 국회 인터넷 사이트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L1A0W3K2Z3K1U7H1Z0G0U8D9O1H5
13. 네이버 어학사전 인터넷 사이트, 동사 “stalk”을 검색
https://dict.naver.com/search.dict?dicQuery=stalk&query=stalk&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14. 미국 위키피디아 인터넷 사이트 스토킹 정의
<https://en.wikipedia.org/wiki/Stalking>
15. 미국 법무부 인터넷 사이트(스토킹에 대한 정의)
WHAT IS STALKING? The term “stalking” means engaging in

a course of conduct directed at a specific person that would cause a reasonable person to fear for his or her safety or the safety of others or suffer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16. 미국 연방법(THOMSON REUTERS WESTLAW EDGE에서 검색)
17. 미국 캘리포니아 법령(THOMSON REUTERS WESTLAW EDGE에서 검색)
18. 미국 버지니아 법령(THOMSON REUTERS WESTLAW EDGE에서 검색)
[https://1.next.westlaw.com/Link/Document/FullText?findType=L&pubNum=1000040&cite=VASTS18.2-60.3&originatingDoc=I29766bc9037311dabf60c1d57ebc853e&refType=LQ&originationContext=document&transitionType=DocumentItem&ppcid=05d430ec4ac54abf9aba17ce65004dda&contextData=\(sc.RelatedInfo\)](https://1.next.westlaw.com/Link/Document/FullText?findType=L&pubNum=1000040&cite=VASTS18.2-60.3&originatingDoc=I29766bc9037311dabf60c1d57ebc853e&refType=LQ&originationContext=document&transitionType=DocumentItem&ppcid=05d430ec4ac54abf9aba17ce65004dda&contextData=(sc.RelatedInfo))
버지니아 법령 § 18.2-60.3. Stalking; penalty, Effective: July 1, 2016, VA Code Ann. § 18.2-60.3
19. 미국 펜실베이니아 법령(Stalking in Pennsylvania law)
<https://www.legis.state.pa.us/WU01/LI/LI/CT/HTM/18/00.027.009.000..HTM>
Chief Brian Marshall, Phoenixville Police Department(351 Bridge St. 1st Fl, Phoenixville, PA 19460, www.Phoenixville.org)]
- * 본 저자의 친구인 Brian Marshall(FBI NA 278기)이라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닉스빌 경찰관이 2022. 2. 5.에 본 수사관에게 관련 법령을 이메일로 전달해 주어 이를 논문에 기재하여 참고함
20. 미국 법무부 인터넷 사이트
<https://www.justice.gov/usao-me/page/file/1411076/download>
21. 가정폭력 핫라인 사이트(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https://www.thehotline.org/>
22. 미국 가족 및 청소년 서비스부 인터넷 사이트
<https://www.acf.hhs.gov/fysb/programs/family-violence-prevention-services/programs/ndvh>
23. 미국 국가 가정 폭력 핫라인 인터넷 사이트
<https://www.thehotline.org/resources/stalking-safety-planning/>
24. 미국 범죄피해자 국가센터 인터넷 사이트
<https://victimconnect.org/>
25. 미국 스토킹 사건일지 인터넷 사이트
https://www.stalkingawareness.org/wp-content/uploads/2018/07/SPARC_StalkingLogInstructions_2018_FINAL.pdf
26. 미국 국가 가정폭력 핫라인 인터넷 사이트(스토킹 범죄에 관한 설

명 자료 중 신변안전보호계획)

<https://victimconnect.org/safety-planning/>

27. 범죄피해자배움센터 인터넷 사이트 내 신변안전보호계획 내 ‘자기 돌보기’

<https://victimconnect.org/learn/self-care/>

28. 미국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연합 인터넷 사이트 내 스토킹 범죄에 관한 가이드

<https://ncadv.org/blog/posts/quick-guide-to-stalking-16-important-statistics-and-what-you-can-do-about-it>

29.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령

<https://mail.google.com/mail/u/0/#starred/FFNDWMMkkhKkMWpPMdbZCMxTTShPgqzTI?projector=1&messagePartId=0.1>

- * 본 저자의 친구인 Johnson Freddy(FBI NA 278기)이라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2022. 2. 5.에 본 수사관에게 관련 법령을 이메일로 전달해 주어 이를 논문에 기재하여 참고함

30.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럿 대학 인터넷 사이트

<https://police.charlotte.edu/safety/what-if-i-am-being-stalked/stalking-myths-and-realities>

31. 버지니아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THE 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https://www.justice.gov/usao-edva/pr/springfield-man-sentenced-13-years-prison-stalking-and-kidnapping-woman>

32. 버지니아주에서의 주요 판결례 1

(Banks v. Commonwealth, 2017, 795 S.E.2d 908, 67 Va.App. 273.)

<https://1.next.westlaw.com/Document/I3c55e6f0f2d411e6b79af578703ae98c/View/FullText.html?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62af0000001803000f46887474a9b%3Fppcid%3D6e7232114590401bbe9a6b62e34fd52f%26Nav%3DCASE%26fragmentIdentifier%3DI3c55e6f0f2d411e6b79af578703ae98c%26parentRank%3D0%26contextData%3D%2528sc.Search%2529%26transitionType%3DSearchItem&listSource=Search&listPageSource=f413d26551b7ede31b800e8521484e2c&list=CASE&sessionScopeld=9f14b5eb62dcddef54078a038b98e5bd710062dd89c87f0239eed56a2260b3de&ppcid=6e7232114590401bbe9a6b62e34fd52f&originationContext=Smart%20Answer&transitionTyp>

e=SearchItem&contextData=%28sc.Search%29
33. 버지니아주에서의 주요 판결례 2
<https://casetext.com/case/stephens-v-rose>